

-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 ----- 사하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8. 10. 26
- 다. 상정일자 : 제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8. 10. 29)
 제7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8. 10. 3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성종무 총무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세출 총괄

①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 세입예산액 101,444백만원 ----- 수납액 115,298백만원
- 세출예산현액 116,966백만원(전년도 이월액 15,522백만원 포함)
 ----- 지출액은 93,030백만원
- 세입수납액(115,298백만원)과 세출예산지출액(93,030백만원)과의 차액인
 잉여금 총액은 22,268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②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4,586백만원(일반회계 4,132, 특별회계 454백만원)
- 사고이월 1,974백만원(일반회계 1,843, 특별회계 131백만원)
- 계속비 이월 5,999백만원, 보조금(국·시비) 집행잔액 536백만원
- ③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 집행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72백만원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 산 현 액 (A+B)	정수결 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처리			정수율 (D/C)	
						계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총 계	101,444	15,522	116,966	129,378	115,298	14,080	998	13,082	89.1	
소 계	81,492	10,811	92,303	100,624	92,144	8,480	998	7,482	91.6	
일 반 회	지 방 세	19,089	-	19,089	22,191	19,086	3,106	422	2,684	86.0
	보 통 세	15,844	-	15,844	16,763	15,794	969	-	969	94.2
	목 적 세	3,007	-	3,007	3,117	3,055	62	-	62	98.0
	과년도수입	238	-	238	2,311	237	2,075	422	1,653	10.3
계	세 의 수 입	20,102	10,811	30,914	36,450	31,075	5,374	576	4,798	85.3
	경상적세의수입	10,483	-	10,483	10,386	10,386	-	-	-	100
	임시적세의수입	9,619	10,811	20,431	26,064	20,689	5,374	576	4,798	79.4
특 별 회	조 정 교 부 금	19,548	-	19,548	19,548	19,548	-	-	-	100
	보 조 금	21,502	-	21,502	21,310	21,310	-	-	-	100
	국 고 보 조 금	8,791	-	8,791	8,718	8,718	-	-	-	100
	시 비 보 고 금	12,711	-	12,711	12,592	12,592	-	-	-	100
계	지 방 채	1,250	-	1,250	1,125	1,125	-	-	-	100
	소 계	19,952	4,711	24,663	28,754	23,154	5,600	-	5,600	80.5
	의료보호기금	6,839	-	6,839	6,944	6,840	104	-	104	98.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5	-	505	602	541	61	-	61	89.9
특 별 회	주차장	2,804	3,757	6,561	10,351	6,818	3,533	-	3,533	65.9
	주거환경개선사업	661	754	1,415	1,514	1,514	-	-	-	100
	장립유수지아설사업	9,047	200	9,247	9,247	7,345	1,902	-	1,902	79.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6	-	96	96	96	-	-	-	100

■ 세출결산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 액	지출액 (D)	의년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합 계	101,444	15,522	116,966	95,005	93,030	12,561	11,375
소 계	81,492	10,811	92,303	78,032	76,188	11,975	4,140
일 반 회 계	구 본 청 소 관	73,293	10,811	74,105	70,021	68,177	11,975
	일 반 행 정	17,250	71	17,321	16,539	16,539	411
	사 회 개 발	35,118	4,515	39,633	30,820	30,761	7,749
	경 제 개 발	18,090	6,225	24,315	20,457	18,672	3,815
	민 방 위	232	-	232	212	212	20
	지원및기타경비	2,603	-	2,603	1,993	1,993	-
	동 소 관	8,199	-	8,199	8,011	8,011	-
	일 반 행 정	7,999	-	7,999	7,828	7,828	-
	사 회 개 발	40	-	40	36	36	-
	경 제 개 발	160	-	160	147	147	-
	소 계	19,952	4,711	24,663	16,973	16,842	586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6,838	-	6,838	6,824	6,824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5	-	505	330	330	-
	주차장	2,804	3,757	6,561	1,600	1,600	586
	주거환경개선사업	661	754	1,415	812	681	-
	장립유수지이설사업	9,048	200	9,248	7,334	7,33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6	-	96	73	73	-

■ 예산성립후 증감액 내용

○ 일반회계 ----- 40건 10,811,693천 원

- 전년도 이월
 - 명 시 이 월 : 9건 4,544,276천 원
 - 사 고 이 월 : 13건 1,826,900천 원
 - 계속비 이월 : 1건 4,440,517천 원

- 예 산 전 용 : 17건 ±217,999천 원

○ 특별회계 ----- 4건 4,710,513천 원

- 명 시 이 월(주거 환경 개선사업) : 1건 258,402천 원
- 사 고 이 월(주거 환경 개선사업) : 1건 495,788천 원
- 계속비 이월(장립유수지이설사업) : 1건 199,213천 원
- 명 시 이 월(주 차 장) : 1건 3,757,110천 원

■ 익년도 이월액 내용

○ 일반회계 ----- 28건 6,575,096천 원

- 명 시 이 월 : 14건 4,131,966천 원
- 사 고 이 월 : 12건 1,843,890천 원
- 계속비 이월 : 2건 5,999,240천 원

○ 특별회계 ----- 2건 585,718천 원

- 명 시 이 월(주거환경개선사업) : 1건 454,708천 원
- 사 고 이 월(주거환경개선사업) : 1건 131,010천 원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세입분야

○ 세입예산액(일반회계+특별회계)에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예산현액이 116,966백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129,378백만원을 정수 결정하여 89.1%인 115,298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98.57%로서 목표액에 다소 미달되었으며 13,082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96년보다 3,642백만원이 증가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부분의 지방세는 86.0%, 세외수입 85.3%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100%를 정수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정수율 89.4% 세외수입 87.9%에 비교하여 정수율이 매우 낮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정수율이 65.9% 장립유수지 이설사업은 정수율이 79.4%등 미수납액이 5,600백만원으로 96년보다 2,627백만원의 미수납금이 늘어났음.
-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이 2,684백만원(96년도 2,31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98백만원(96년도 4,157백만원)등 7,482백만원으로서 96년도에 비하여 15.7%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이 104백만원(96년도 79백만원), 주차장 3,533백만원(96년도 2,816백만원), 장립유수지 이설사업이 1,902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전체 38.6%가 증가되어 체납액 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정수대책 강구가 필요.
- 체납액관리에 있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해당 체납자의 보증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등 관련자의 재산이 은닉 또는 처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할 것임.

나. 세출분야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등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16,966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등 의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1,375백만원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542백만원, 사회개발비 1,128백만원, 경제개발비 1,840백만원, 민방위비 20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10백만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75백만원, 주차장에서 4,375백만원, 장립유수지 이설사업에서 1,914백만원 등이 발생

이러한 결과는 96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5,840백만원에 비하여 무려 5,53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96년도 대비하여 1,05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6,585백만원이 증가 되었음.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561백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600백만원으로 불용액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겠음.

○ 분야별 미흡한 부분으로는

첫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32건에 63백만원이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17건에 218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계획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행정을 수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둘째, 여성회관건립 및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타 건립에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못하고 다음해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안일한 사고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보임.

셋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공공재산 감소 13,840천원은 용도폐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 되었으며 금후에는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임.

넷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은 예산액 504,611천원, 지출액 329,850천원으로 불용액 174,761천원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융자실적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보증문제등 조례개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봄.

다. 종합의견

- 향후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결산상의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음.
- 기타사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 요지 : 별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 29~30)
질의 · 답변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p>이석래위원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징수율 (86%) 저조 사유와 대책은? ○ 특히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10%로 징수실적이 부진함, 이에 대한 사유분석과 대책은? ○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 서도 징수율(65.9%)이 저조한데, 그 사유와 향후 개선 방안은? 	<p>(세무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서 전달과 부과의 정확성 등 간접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징수부진은 경기침체에 기인되고 있으며 구전체 직원의 책임 할당제 도입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 <p>(교통행정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체납액은 약 35억 정도 됨 체납의 주요인은 단속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 제기, 그리고 고지후 가산금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없어 일괄 납부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대책은 특정지역으로 단속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공매, 부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할 계획임. ○ 97년도 상반기 전화압류 등으로 체납액 6억원중 2억 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음
<p>장용희 위원 :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사유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납액(95년 55억, 96년 65억, 97년 74억)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사유분석과 향후 개선 대책은? 	<p>(세무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년도 체납이 증가되고 중과세 체납가산금 증가와 신평장립공단 입주 기업체 도산과 관련된 요인이 많음
<p>김주석 위원 : 결손처분액 증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6,000만원 96년도 8,100만원 97년도 결손처분액이 9억9,700 만원(무재산 34건 3억9천, 시효완성 6억)으로 전년도 대비 1,120%가 증가한 사유분석과 시효완성 경과시까지의 조치내역은? 	<p>(세무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도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4번정도 설정하여 타년도 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와 시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약18억~20억)과 병행됨으로서 구세 결손처분액도 함께 증가하게됨. ○ 또한 시의 강력한 결손처분지시에 따라 (주)신서, 동화산업, 우성냉동 등 규모가 큰 억단위 세액이 결손처분 된데도 그 원인이 있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석래 위원 :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사항 분석 ○ 징수고지후 기한내 납부를 위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액 과다 발생된 것 아닌지?	(세무과장) ○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2~3년이 경과된 뒤에 통보되는 경우도 있음. ○ 시효완성 중지를 위한 법상 가능한 조치를 다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1회의 독촉장 발부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이 계산됨
장용희·김재영 위원 : 무재산 결손처분 사항분석 ○ 무재산 결손처분된 34건 3억 9,000만원의 대상자 중에는 재산 소유자도 일부 있음	(세무과장) ○ 균등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타인 근저당설정 1순위 공매처분 등이 무재산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12배가 증가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결손처분은 우리구가 조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공무원 스스로 결손처분을 많이 거리고 있음 또한 명확한 과세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장용희·김재영 위원 : 과오납 반환금 증가 내역분석 ○ 과오납액이 4억3,4000만원(일반회계 3억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800만원) 발생한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높고, 서비스 행정에 역행함은 물론 조세 법률주의에 근거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 시킴으로서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 개선대책은? ○ 98년도 부산시 전체에서 지방세 과오납으로 환불해준 세액이 250억이며, 이중 과다부과가 51억 7,600만원이며 그 가운데 우리 사하구가 24억1,600만원으로 최다 발생된 언론보도 사실에 대한 대책은?	(세무과장) ○ 97년도 390건에 착오과세가 221건이며 그 내역은 과표 및 법규적용 착오와 담당직원의 업무연찬 부족등에 기인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부주의로 이중납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직원 실무교육 파견과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과오납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장용희 위원 :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분석 <input type="radio"/> 97전체 불용액이 113억7400만 원으로 과다 발생되었음 <input type="radio"/>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와 향후 개선대책은?	<p>(재무과장)</p> <input type="radio"/> 불용액 113억원중 일반회계가 41억4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구분해서 비교할때 95년도 78억, 96년도 51억 원과 대비해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49억6100만원)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19억13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 되었음. <input type="radio"/> 사유별 대책을 정밀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집행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장용희 위원 : 세외수입 증대 방안모색 <input type="radio"/> 다대포 해수욕장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구의 경상수입 증대 용의는?	<p>(총무과장)</p> <input type="radio"/>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있으나 수자원개발공사의 을숙도 주차장 유료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제가 있음. <input type="radio"/> 구 재정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 하겠음
이석래 위원 :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방안 <input type="radio"/> 과년도 수입 2억3,6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징수율10%) 지급한 징수포상금 내역은? <input type="radio"/> 결손처분이 전년대비 상당한 비율로 증가되는 등 조세행정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방안은?	<p>(세무과장)</p> <input type="radio"/>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은 징수 금액의 5%를 1인당 30만원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input type="radio"/> 고질 체납자등에는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압류등 징수율 제고에 쇄선을 다하고 있음
김재영 위원 : 잡수입 미수납액 사유분석 <input type="radio"/> 잡수입 미수납액 15억1,900만 원중 보상금 1억3,600만원, 과태료 수입 13억8,2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 수입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제도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다 고 봄 <input type="radio"/> 미수납 사유와 개선방안은?	<p>(재무과장)</p> <input type="radio"/>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와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변상금과 과태료 수입이 균원적으로 징수율이 매년 저조한 것은 그 사안별 자체가 찾고 있는 특성도 있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김주석 위원 : 세출내역 분석 <input type="radio"/> 관급 서울신문 구독료 지급내역은?	(문화공보과장) <input type="radio"/> 97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왔음 98년부터는 배부처를 절반으로 줄어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음
김재영 위원 : 예산전용 문제점 분석 <input type="radio"/> 예산전용 부문에 있어 '96년도 우수건축물 보상금을 '97년도에 전용 집행한 사유는? <input type="radio"/> 공무원 수당등을 지급하기 위해 12월달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기획감사실장) <input type="radio"/> '96년도 집행예산은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으며, '97년에 건축지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70만원을 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input type="radio"/> 70만원의 용도는 작품걸이대 설치비에 소요 <input type="radio"/> '97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됨 <input type="radio"/> 사전에 집행예산을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부분임. <input type="radio"/>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라 부서별 추계 잘못으로 인한 오류 부분임.
장용희 위원 : 예산전용 및 이월 집행 문제점 분석 <input type="radio"/>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지급을 위해 당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해서 지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input type="radio"/> 해마다 반복적으로 많은 사업과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있음 <input type="radio"/>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이월사업 최소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겠음. <input type="radio"/>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매입 관련 보상비와 공사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은 어떤지?	(기획감사실장) <input type="radio"/> 같은 세항안에 있는 직원들 국외여비부분 예산에서 전용해서 부산시에서 주관한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상자 부부해외시찰 여비 부족분을 집행한 사항임. (건설과장) <input type="radio"/> 공사관련 시설비가 없으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공사를 위한 철거비 등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지역이 슬럼화 될 우려가 있음 <input type="radio"/> 금년도 이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장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p>강정순 위원 : 세출예산 낭비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 토지매입비 확보없이 설계비 편성으로, 금년도에 건립부지 이전에 따라 설계 관련 예산낭비 ○ 이런사례는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 	<p>(사회복지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사업추진 계획이 지난해 연말 IMF 영향에 따라 주택건설부진으로 미집행되고 향후도 4~5년간 부지조성 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장립유수지 매립지로 건립부지를 이전하게 됨
<p>장용희 위원 : 계속비 집행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청소년 국제 문화교류센타등을 위한 계속비 예산의 집행 상황을 보면 계획예산에 비해 연도별 집행금액이 극히 저조함 ○ 올해의 예산 집행 실적을? ○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은? 	<p>(문화공보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사업 필요성에 따라 국·시비 확보를 위해 연도별 예산액이 편성 되었음. ○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은 연약지반 보강공사에 많은 공기가 소요(1년 6개월)됨에 따라 연도별 계획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 올해 예산은 16억 확보하여 지출은 기성금 1억4,000만원이 지급 되었음. ○ 구의회와 신중히 검토·협의해서 향후 예산편성 하겠음.
<p>장용희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과오납 및 미수납 체납액 관리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과오납 금액이 88,838,000원 발생하였음 ○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요인 되고 있는 과오납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p>(교통행정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금액이 많다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 금증 상당부분이 수납은행의 연도별 회계간 이관 착오사례 발생으로 과오납 금액이 많음. (약 8천백여만원) ○ 이중 실제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 금액은 300만원 정도임 ○ 지난해까지 미수납액은 35억 3,300백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주차단속 요원 36명으로 구전역에 걸쳐 공정한 단속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가가 되지 못하고 또 과태료는 조세와 달라 금융재산 암류나 번호판 영치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김재영 위원 : 재속비 집행실태 ○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센타 건립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총무과장) ○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업으로 97년까지 예산은 국·시비가 각각 8억, 구비 3억 원 등 19억 확보 ○ 이 사업은 97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계속사업으로 98년 국비 12억이 확보되었으나 시비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로 연말에 가서 추진계획을 재검토 해야 할 입장임
강정순 위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영실태 ○ '97년 주민생활안정용자금 지원 실적이 329백만으로 저조한데 ○ 용자금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한 사유는 용자금 신청시 보증인을 우리구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 97년 기금용자 금액이 35건에 3억2,9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5% 집행하였음 ○ 관련 조례는 98년 하반기부터 부산시내 거주 주민을 보증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장용희 의원 : 채무관리 실태 ○ '97년말 현재 우리구의 채무현황을 보면 채무총액이 5,195,658,270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임(채권은 11억8천만원) ○ 앞으로 구의 채무액을 갚을 방법 및 줄일 수 있는 계획은?	(기획감시실장) ○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동사무소 신축,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등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및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액 등임. ○ 상환조건은 2년~10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연리 3%임 ○ 매년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하여 10년까지 계획대로 상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봄.
김주석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관리 실태 ○ 불용액(49억)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검토 하였는지?	(교통행정과장) ○ 본 특별회계 자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부지선정, 가격협의 애로 등으로 도심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예산집행에 애로 ○ 금년도엔 장림동·공유수면매립지 지역에 화물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임. ○ 주차장 설치 문제는 수익성 확보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검토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로의 자금전환은 특별회계 폐지로 가능할 것으로 보나, 불법 주차단속 취지를 살펴볼 때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p>김재영 위원 :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말 현재 불용액이 49억 남았음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한 성과와 다음해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은? ○ 장림동 주차장 확보계획의 수익성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 타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반재원화 노력이 돋보이고 있음. 우리구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용의는 	<p>(교통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액 49억은 전년도 이월액 37억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난해 괴정, 당리, 장림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부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가격차로 인해 괴정, 당리 지역은 무산되었음 ○ 장림동 328-4번지 주차장 부지는 지난해 매입하여 운영중인데 주차장 관리는 수익성보다는 주민생활편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주차면수는 50면이며 당초 년 5천9백만원 대부금을 반기로 계약하였으나 금년 9월 연 2천4백만원으로 재계약하여 분기별 선납받고 있음 ○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장림유수지 매립지에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00평 이상 나대지, 노후건물 등을 물색해서 부지 확보에 노력 하겠음.
<p>이석래·이정도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림동 공영 노외주차장의 반경 50m이내에 화물주차장이 설치될 계획이고, 또 인근 장림유수지 매립지내에 200평 규모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의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로 봄. ○ 장림유수지 매립지내 주차장 부지설치는 당초 없던 계획으로 유수지부지 매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p>(교통행정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림동 공영주차장(12억투자)은 현재 50면 정도 주차공간을 갖고 있으며, 또 계획중인 대형화물 주차장도 인근의 장림시장, 공단 등의 이용 차량주차를 위해 확보가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민영주차장의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한 설치비용과, 각종세제 혜택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익성과 투자비용을 직접 수치로 대비하면 주차시설 확보는 어렵다고 봄.

질의요지	답변요지
<p>장용희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실태</p> <p>○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3억이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된 사유와 예산과목이 예비비로 하지 않은 사유는?</p>	<p>(교통행정과장)</p> <p>○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13억인데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p> <p>○ 주차시설 대상부지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부지 매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립금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p>
<p>이석래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실태</p> <p>○ IMF로 지가하락</p> <p>○ 지금이 부지확보의 투자격기임.</p> <p>○ 장림동 매립지내 주차부지 확보는 공개토론을 거쳐 시행하기 바람</p>	